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6

발의연월일: 2020. 7. 10.

발 의 자: 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기동민 · 박찬대

권칠승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생산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기준을 초과한 농수산물은 폐기, 용도변경 등 조 치하여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신속한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출입조사 장소를 생산·저장시설, 자재창고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현장에서 통보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의 폐기 등 조치 이외에 같은 양식장 내에서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양식시설 수산물에 대해서 출하 정 지 등 위생상 조치를 할 수 없는바,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 을 차단하기 위해 양식장 일부 수조에서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한 경 우 같은 용수를 사용하는 양식장 전체 수산물에 대해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나 소유한 자가 폐기 비용 등을 이유로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에 정부가 우선 폐기하 고 그 비용을 생산자에게 청구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으로써 부적합 농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안전관련 교육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하여 지 역농어민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안전성조사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장소(생산·저장장소, 자재창고 등)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안 제62조).
- 나. 안전성조사 결과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을 일시적 출하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63조제1항).
- 다. 생산자 등이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폐기 조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안 제6 3조제2항 신설).

라. 현행 농수산물 안전교육 수행의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 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안 제66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 제목 중 "(시료 수거 등)"을 "(출입·수거·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계 공무원에게"를 "관계 공무원이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저장소,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수거·조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단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수거·조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 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수거·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당 양식장의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5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
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
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

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

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

거를 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료 수거,조사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2조(시료 수거 등) ① 식품의 제62조(출입・수거・조사 등) ①

아

개 정

----- 관계 공무원이 농수산 물 생산시설(생산·저장소, 생 산에 이용·사용되는 자재창 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수거· 조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미 리 조사목적, 기간과 장소, 관 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조사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대상자 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 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전단의 사 ③ 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 항을 준용한다.

<신 설>

1. • 2. (생 략)

<신 설>

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수거・ 조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 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 게 내보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 반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 에 따른 출입・수거・조사 등 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조치) ① ---------위반하였거나 유해물 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 • 2. (현행과 같음)

2의2. 해당 양식장의

3. (생략) <신 설>

② (생략)

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 • 홍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출하 정지 등의 처리

- 3. (현행과 같음)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 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 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 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 육 등) ① -----이나 시·도지사는 안전한 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은----

② (현행과 같음)